

● 환경부고시 제2023-183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08월 10일

환경부장관

**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**

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“1254”란 다음에 “1255”란부터 “1260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연번	고유번호	화학물질명	CAS번호	하위 규정수량 (톤)	상위 규정수량 (톤)
1255	2023-1-1110	3,5-디플루오로페놀 [3,5-Difluorophenol]	2713-34-0	20	500
1256	2023-1-1111	테트라하이드로-3-메틸티오펜 1,1-디옥사이드 [Tetrahydro-3-methylthiophene 1,1-dioxide]	872-93-5	20	500
1257	2023-1-1112	1,1,1-트리플루오로-N-[(트리플루오로메틸)술폰 포닐]메탄술폰아미드의 세슘염 (1:1) [1,1,1-Trifluoro-N-[(trifluoromethyl)sulfonyl] methanesulfonamide, cesium salt (1:1)]	91742-16-4	20	500
1258	2023-1-1113	1,1,2-트리클로로에탄 [1,1,2-Trichloroethane]	79-00-5	5	200
1259	2023-1-1114	1,5-디이소시아나토펜탄 중합체, 2-에틸-1-헥 산올-블럭 [1,5-Diisocyanatopentane homopolymer, 2-ethyl-1-hexanol-blocked]	1976005-08-9	5	200
1260	2023-1-1115	이소노닐 인산 [Isononyl phosphate]	84988-61-4	20	-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